

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제출 안내문

안녕하십니까? 불철주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헌신하시는 귀하의 사업장 관계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2021년 10월 21일 개정·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(정기점검 및 정기검사)와 관련하여 안내 드리니 확인하시고 점검결과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1회 「정기점검」을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(이동탱크저장소)로 하여금 실시 하여야 하며,

「정기점검」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표를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1부는 기존대로 3년간 자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.

<벌칙사항>

-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정기점검 후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그 밖에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관련 문의사항은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화재안전조사팀 위험물 정기점검 담당(☎ 031-8012-9352)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앞으로도 안전한 위험물 관리로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의 번창과 모든 관계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2024년 1월

수원소방서장